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9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이철규 · 서명옥 · 이양수
박준태 · 신성범 · 조지연
박상웅 · 정동만 · 구자근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kg → 3kg)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표시 사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표시 사항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소속 공무원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 다.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 라.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제4호 신설).
- 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정량표시상품사업자”를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

제7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	제50조(조사 등) ① ----- -----

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⑥ (생략)

-----.

1. -----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3. ~ 22. (생략) ③ (생략)	제73조(벌칙)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u>----- ----- 3. ~ 2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